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	<h1>보도자료</h1>	2016. 4. 28(목)	
		작성 · 문의	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 과장 정안진, 감사관 이동영, 황영호 (Tel. 02-3703-2014, 2015)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문금주, 주무관 오현문 (Tel. 02-2100-3121, 3142)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 이정기, 사무관 김재희 (Tel. 044-201-3573, 3579)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과장 김영중, 소방령 이경수 (Tel. 044-204-6190, 6195)
* '16. 4. 28(목) 14:3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# 총리실·행자부·국토부·안전처 공동 배포 # 브리핑 : 4.28(목) 14:30, 정부세종청사,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			

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

-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중 특허공법·공동계약 분야 위법 적발
- 부적합 철강재 사용 공사현장 및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공사 부실감리 적발

<p>▶ (건설계약 분야) '10~'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 중 특허·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,539건 전수조사 및 공동계약 형태의 용역계약 총 2,384건 표본조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허의심 특허·신기술 공법 적용, 면허미소지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 204명 적발 -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6명 포함 18명 수사의뢰, 공무원 192명 징계 요구 <p>▶ (시공·감리 분야) 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불량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 31개 점검 및 전국 상주감리 대상 소방시설공사 33개소 표본 조사하여 실태점검 후 제도개선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 사용, 품질성적서 변조 등 15개 업체 적발 및 행정처분 요구 -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부실감리 7개 업체 적발 및 행정처분 요구, 그 중 4개 업체 형사입건
--

I. 점검 배경

- 건설 분야는 국민 체감 부정부패 심각성 높고*,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우려가 높아 취약 분야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 필요

* 국민의 행정 분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, 건설 분야가 1위('15. 12. 한국행정연구원)

- 이에,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(단장: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)은 '15. 8.~'16. 1. 동안 행정자치부, 국토교통부,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,
 - 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·신기술 공법(전수조사),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(표본조사), ②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철강재 사용 실태(표본조사), ③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감리 현황(표본조사) 등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

II. 점검 결과 및 조치

1. 계약 분야

- 지방자치단체 발주 특허·신기술 공법¹⁾, 공동계약²⁾은 발주자와 업체 간 유착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,
 - 추진단은 행정자치부, 전국 광역시·도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음('15. 9. ~ '16. 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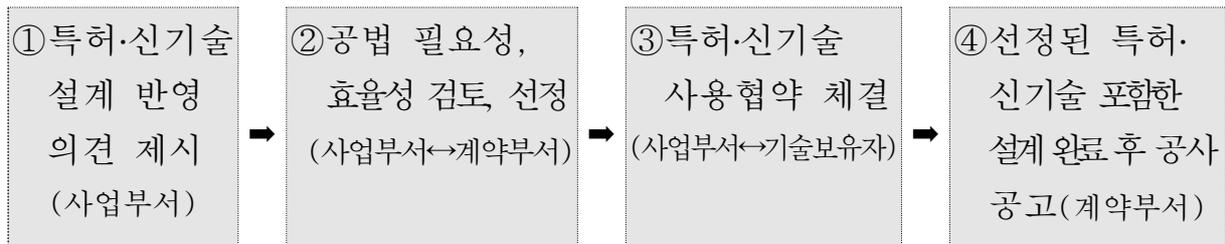
1) 특허·신기술 공법이 공사에 적용될 경우, 해당 특허·신기술 보유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청을 통해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음

2) 공동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

[특허 · 신기술 공법]

- '10~'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·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,539건을 전수조사하여, 업무 소홀 사례 총 1,483건 적발(적발율 12.9%)
-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,195건*, 특허·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** 등 적발
- * 유사 공법과의 비교 등 해당 공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·선정하는 적정한 공법선정 절차 거침으로써, 공법 선정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공법보유자간의 유착을 예방
- ** 공법이 선정되면 설계 완료 전에 공법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, 시공단계에서 공법보유자의 과다 기술사용료 요구나 비협조, 발주자와 공법보유자 사이의 유착을 예방

<특허·신기술 공법 계약 업무절차 흐름도>



-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 사례가 골고루 나타나고, 특허공법·신기술 유형이 다양한 도로·교량, 상하수도 분야가 많았음
- 위 적발사례 중 특허·신기술 공법 적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거나 부실 설계·시공 발생 등 사안이 중한 일부 사례를 조사하여 비리의혹이 있는 18명 수사의뢰하고, 귀책사유가 비교적 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명 징계요구

※ 나머지 위반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보,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 예정

< 주요 적발 사례 >

▶ 경북 A시 ○○실내체육관 지붕공사 특허공법 특혜 의혹, 부실 설계·시공

- A시는 '12.6. ○○실내체육관 신축공사시 지붕 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 (Super PEB)의 필요성·효율성에 관한 사전 검토 절차 없이 선정하고,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음(총 공사금액 73억 원)
 - 위 특허보유자는 지붕공사를 설계하면서 지붕공사와 관련된 체육관 구조 설계시 연약 지반임에도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 계산하고 뿔 하중 계산을 누락하였으며, 설계 후 시공을 담당하면서 접합부 일부 볼트 (총 136개)를 시공하지 않음
 - * 현재 바닥균열(8cm), 벽체누수 등 안전 문제 발생
- ⇒ A시 공무원 등 총 6명 수사의뢰 예정

▶ B도시공사 ○○산단 조성공사 특허공법 특혜 의혹, 뇌물수수 등

- B도시공사 임원 甲은 '13.4. 발파 특허공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위 업체에 특허사용협약 체결의 특혜를 준 의혹 등
 - 부적격업체와 특허권 사용협약 체결 특혜 의혹(26건, 405억원), 특정 업체에게 하도급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혜 제공 의혹(18건, 355억원) 등
- ⇒ B도시공사 임원 甲 등 총 9명 수사의뢰('15.12.)

▶ 경기 C시 ◇◇도로 공원 조성공사 특허공법 부적정 선정

- C시는 '13.12. ◎◎-△△간 ◇◇도로 공사시 교량 상부의 공원 조성을 위한 공법을 선정하면서,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을 참여시켜 특허공법 선정(총 공사금액 749억 원)
- * 현재 교량상부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관련 설계 오류 발견되어 보강 사업비로 4.9억 원 소요 예상

▶ 특허공법 선정 절차 미준수

- 경기 D시는 '13.7. ▽▽-□□간 도로확·포장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을 필요성·효율성에 관한 사전 검토 절차 없이 선정하고,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음(총 공사금액 338억 원)
- 전남 E군은 '14.4. ☆☆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공사에 사용될 특허제품을 필요성·효율성에 관한 사전 검토절차 없이 선정하고,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고, 특허제품이 설계에 포함된 사실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음(총 공사금액 29억 원)

[공동계약]

○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분석, '10~'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계획·설계 용역을 공동계약 형태로 체결한 공사 총 20,994건 중 2,384건을 표본 조사하여, 업무소홀 사례 1,370건 적발(전체대상 대비 6.5%, 표본조사대상 대비 57.5%)

-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82건*, 공정입찰을 제한하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 등 1,288건**

*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·신고·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),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
** 공동수급체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참여업체수를 정하는 것인데,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참여업체수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 가능성이 있음

- 적발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나타나고, 특히 계약건수가 많은 상하수도, 방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, 지역업체에 부당한 특혜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음

○ 그 중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총 82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크고 자칫 부실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5명 징계요구

※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한 34개 지방자치단체(총 82건, 공사금액 710억 원)에 대하여는, 행자부에서 내년 지방교부금지급시 총 공사금액의 약 10%에 해당하는 71억 원 상당을 감액할 예정

※ 나머지 위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보,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 예정

< 주요 적발 사례 >

▶ 지역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

- (규정에 위반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참가자격 완화)

B시는 '15.7.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, 관련 규정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면허, 허가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규정에 위반하여 C도내 업체에 대하여는 일부 면허(일반산업기계 면허) 없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완화하여 면허미소지 업체와 계약 체결(총 용역금액 8억 원)

- (면허미소지 지역업체 포함된 공동수급체(컨소시엄)와 계약 체결)

C광역시는 '13.5.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 입찰에서 입찰자격요건으로 공고한 면허 중 일반산업기계, 전기설비, 전력시설물설계업 등 3가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지역 업체 2곳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(총 용역금액 15억원)

▶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(컨소시엄)와 계약 체결

A광역시는 '13.5. ○○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용역 입찰에서, 입찰자격요건으로 공고한 면허 중 일반산업기계, 전기설비 등 3가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 2곳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 체결(총 용역금액 13억 원)

▶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

경남 D군은 '13.5. ○○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입찰 공고를 하면서, 입찰참가자인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참여업체수를 구성할 수 있는데,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참여 희망 업체들의 참여 기회 박탈(총 용역금액 8억원)

2. 시공 분야

- 최근 수입산(주로 중국산) 불량 철강재가 건설현장에 유입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,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
 - 이에, 추진단은 철강재 유통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가기술표준원, 관세청, 한국철강협회 등과 합동 점검 실시('15. 8.~10.)
 - * '13~'15년간 수입산 철강재 수입 14% 증가(1,939만톤→2,206톤), 그 주된 원인은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싸기 때문임(국산의 80% 수준)
 - * 중국산 철강재(H형강)의 내수 시장 점유율('15년) : 29%
-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로 「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(한국철강협회 운영)」에 제보된 전국 31개 건설현장 점검
 -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(H형강) 사용 공사현장 9곳 및 동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적발하여 품질성적서 변조 등 28건의 위법행위 확인
 - 적발된 15개 업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('15. 12.)

< 주요 적발 사례 >

▶ KS 인증 및 품질성적서 없는 중국산 철강재(H형강) 사용

- 건설업체인 A사는 '15.9. ○○광역시 소재 금속가공 공장(3층) 신축공사 현장에서 KS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절차도 거치지 않은 중국산 H형강 사용(적발된 28건 중 15건이 이와 유사한 사례임)

▶ 품질성적서 변조

- 철강재 중간판매업체인 A사는 '14.4. 경기 ○○시 소재 생활용품 제조 공장(3층) 신축공사 현장에 국내 철강재 제조업체인 C사가 제작한 H형강(SS400)을 납품하면서 강도가 더 높은 제품(SS490)인 것처럼 C사가 발행한 품질성적서를 변조하여 제공

3. 감리 분야

- 국민안전처, 4개 시·도, 소방산업기술원 등과 합동으로,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전국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, 전국 대형소방시설 공사 상주감리 대상* 총 321개소 중 33개소(광역시·도별 1~2개소) 표본 조사(‘15. 10.)

* 연면적 30,000㎡ 이상 건축물 및 16층·50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책임 감리원 1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하는 공사

- 감리일지 허위작성, 감리원 미배치 등 7건의 위법행위 적발하여 4건 입건 및 6건에 대해 행정처분 요구(‘15. 12.)

< 주요 적발 사례 >

▶ 감리일지 허위작성

- A감리업자는 ‘15.10. ○○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실제 공정이 벽체배관 공사 및 주차장 슬라브 전기박스 시공 등임에도 감리일지에는 공사초기에 했어야 하는 감리자 배치의 소방관서장 통보 등으로 기재하여 감리일지 허위 작성

▶ 감리업무 소홀

- B감리업자는 ‘15.10. ○○광역시 소재 병원 신축공사에서 배관 보온조치, 시각경보기 위치, 발전기실 방화구역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지도·감독 업무 소홀로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

▶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

- C감리업자는 ‘15.10. 경기 ○○시 소재 △△사옥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D로 신고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E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케 함

Ⅲ. 개선책 마련 및 제도개선

1. 개선 · 시행

- 특허·신기술 보유자 등과의 유착 방지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강화
 - 특허·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및 특허·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등 계약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사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 신설
 - * 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’ 개정(‘16. 1.)
- 일정규모 이상*의 소방시설공사에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의무화(‘16. 1.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)
 - * 연면적 3만㎡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
- 감리업자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감리결과 허위보고 행위시,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제재 강화³⁾ (‘16. 1.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)

2.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 <시공 분야>

-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⁴⁾ 개선
 - 품질시험 단계별*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
 - * 시료채취(시공자)→봉인(감리)→시험의뢰(시공자)→시험성적서 발급(품질시험기관⁵⁾)

3) (기존)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➡ (개선)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
4)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(<http://www.calspia.go.kr>)

- 현재는 시험성적서만 전산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㉠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시행하거나, ㉡ 품질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

○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절차 미준수 행위 제재 강화

- 품질시험절차를 미준수*한 품질시험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 규정 신설(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예정)

* 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 미입력, 미봉인시료 시험 등

- 감리자의 품질관리 지도·감독 업무 소홀* 및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·조작 행위**에 대한 제재 강화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예정)

* (1차 적발시) 경고 → 영업정지 1개월 / (2차 적발시) 영업정지 1개월 → 2개월 / (3차 적발시) 영업정지 2개월 → 3개월

** 최근 1년간 2회 적발 시 (기존) 영업정지 6개월 ➡ (개선) 등록취소

○ 기준 미달 철강재 유통 단계별 차단대책 마련

- 생산단계 : 철강재 KS 인증제품 심사 주기 단축(3년→1년, 산업부)
- 수입통관단계 : 철강 통관시 품질인증 허위여부 조사(관세청)
- 유통단계 : 품질인증 위변조 등 단속 강화(반기별→분기별, 산업부)
- 건설현장 : 기준 미달 철강재 불시단속제 도입(현행 3일전 통보, 국토부)

5) 서울지방국토관리청, 서울대 등 국립·공립시험기관(41개)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자(145개)